

2019년도 제17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8. 29.(목요일), 10:0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최승수 위원(분과위원장), 강호갑 위원, 정태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162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4,651건(안건번호 제2019-101656호~104483호)
 - 회의결과 :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7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162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전차 회의록 5쪽에 게시자가 작성한 글이 있는데 검색 결과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21쪽의 해외 사행성 사이트 주소를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 A 위원 :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며, 게시자가 작성한 글과 해외 사행성 사이트 주소는 비식별 처리 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하는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 같은 생각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게시자가 작성한 글과 사이트 주소는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전은 안전번호 제2019-101656호~104483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총 4,651건임
안전번호 제2019-101656호, 101657호는 네이버 이용자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우리말로 번역된 '라이트노벨' 복제물을 게시판에 올린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며) '던전에서 만남을 추구하면 안되는 걸까'(던만추)는 10대~20대 사이에서 인기 있는 소설임
안전번호 제2019-101656호 게시물에 '제가 좀 많이늦었죠 던만추 찾아달라는요청으로 올립니다 외전도같이올려욧'라고 적혀 있음
안전번호 제2019-101657호 게시물에 '저는 파일을 찾아서 올리는것이기에 오타지적은 받지않습니다 제가말하기도 뭐한데 로리콘들에게 필요한 라노벨이라고 생각함 필요하다면 일러스트 사이트 주소도 올려줌 댓글에 답쫌'이라고 적혀있어 복제·전송자가 직접 우리말로 해당 소설을 번역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임
'던만추'는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를 하고 있어서 비교해보았는데 내용이 일부는 동일하고 일부는 상이함
'로큐브'는 전자책으로 출판되지 않아 블로그에 게시된 게시물과 합법 저작물을 비교할 수 없었음
 - B 위원 : 검토보고서에 '던만추' 10권을 비교한 자료를 볼 수 있는데 블로그에 게시된 저작물이 원본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왼쪽에 '블로그 게시물 화면'이라고 표시된 것이

심의대상 게시물이고, 오른쪽에 '미리보기 화면'이라고 표시된 것이 합법 저작물임

- B 위원 : 비교한 자료가 동일한 페이지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동일한 페이지이며, 일부 표현이 다르다고 답변함
- B 위원 : 본인이 직접 번역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블로그 게시글을 확인해보면 '저는 파일을 찾아서 올리는 것이기에 오타지적은 받지 않습니다'고 되어있어 본인이 직접 번역하였을 가능성은 낮음
- A 위원 :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C 위원 : 가결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B 위원 : 복제·전송자가 직접 외국 소설을 번역하여 텍스트파일로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렸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복제·전송자가 직접 번역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번역한 것을 텍스트 파일로 올렸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봐서 시정권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01656호, 10165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

권고를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104483호는 국내 소설 '비커즈'를 카페 이용자가 텍스트 파일로 게시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과 합법 저작물을 비교했을 때 일부 표현이 수정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음
예를 들면, 소설 내용 중 '대여섯 살'을 '5~6살'로 변경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번역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원저작물을 의도적으로 변경했다고 보임

- A 위원 : 국내 저작물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그렇다고 답변함

- A 위원 :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가결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B 위원 : 가결로 의결하는데 동의함

- C 위원 : 의견에 동의함
소설을 텍스트 파일로 제작한 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텍스트 파일을 제작한 사람이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여섯 살'을 '5~6살'로 변경한 것으로 보임
전체 소설의 내용이 합법 저작물과 다르다면 2차적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부 글자만 변경한 것으로 시정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04483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01658호~104482호는 모두 단순 복제한 음악, 어문, 게임, 영상물을 웹하드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이용에 무단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영화 '원더랜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02054호는 모바일웹하드 사이트에 게시된 것이고, 2019년 개봉한 최신 영화이며.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방송 '유 퀴즈 온 더 블록'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02555호는 모바일웹하드에 게시된 것이고, 8월 6일 tvN 채널에서 방영한 방송물을 제공하고 있음
(방송 '뽕 따라 가세'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02682호는 8월 8일 tv조선에서 방영한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영화 '레드슈즈'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02966호는 국내 애니메이션으로 7월 25일 개봉하여 현재 상영 중임
(게임 '프로토타입2'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04116호는 게임 복제물을 제공하고 있음
(게임 '새도우 다이 트와이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04190호는 게임 복제물을 웹하드에서 제공하고 있음
(만화 '어서 오세요 실력 지상주의 교실에' 목록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04263호는 만화 복제물을 제공하고 있음
(음악 '안녕'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04467호는 게시물 제목에 '폴킴의 안녕'으로 되어 있어 '안녕' 한곡만 게시된 것으로 보이지만,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보면 멜론 TOP100 최

신저작물을 압축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01658호~10448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A 위원 : 해당 게시물은 데드카피이므로 시정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 시정권고 가결하는 의견에 동의함
- B 위원 : 같은 생각임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19-101656호~104483호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o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17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17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9. 5.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강호갑

위원 정태호